

제2652호
2019. 4. 26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 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
 전화: 3396-4955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| | |
|---|------|
| 선 | 기관의장 |
| 람 | |

구 보

● 고 시

제2019-46호 :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2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공람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 2019-46호

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9년 4월 25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| 대상 시설물 | | | 지정(해제)사유 | 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시설물 명칭 (용도) | 소재지 | 관리주체 | | | |
| 장충동2가 193-57 (제2종 근생) [공개] |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93-57 | 장충동2가 193-57 소유자 및 관리자 | 재난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계속적 안전관리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(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3조 제 1항 제4호에 해당) | 기둥, 보 등 일부 보수· 보강으로 위험요인 해소 | |